

2023년 4차 중소기업 품질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시행공고

2023. 11. 22. (수)

한국원자력산업협회와 한국수력원자력(주)는 원자력산업의 품질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운영 원전의 지속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, 원전생태계 활성화 및 창업·벤처기업 지원을 통한 원전 생태계 저변 확대를 위해 한수원 유자격 업체 등록, KEPIC 및 해외인증 등 중소기업 품질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1. 주요사업

- 가. 한수원 유자격 공급업체 등록 지원
- 나. KEPIC 원자력 품질인증 신규 취득 및 갱신 지원
- 다. ASME 등 해외인증 신규 취득 및 갱신 지원

2. 지원 개요

가. 지원 내용 : 한수원 유자격공급자 등록 및 KEPIC / 해외 품질인증 취득 소요비용 지원

※ 본 사업은 기업 측 비용집행 후 원산 청구하는 시스템이며, 비용집행 이체일 기준으로 협약기간 내 집행한 비용만 청구 및 정산이 가능합니다.

※ 인증취득 불가 시, 기업에서 집행한 비용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.

나. 지원 범위 : 연간 1개 지원분야만 지원 가능 (이중, 중복지원 불가)

다. 모집 과제 수 : 약 20개 과제 (변동 가능)

라. 지원 규모

- ※ 2017년 이후 지원분야 구분 없이 다수 선정 시 총 지원금 감액 지급
 - 2회 선정 시(총 지원금의 60%), 3회 이상 선정 시(총 지원금의 30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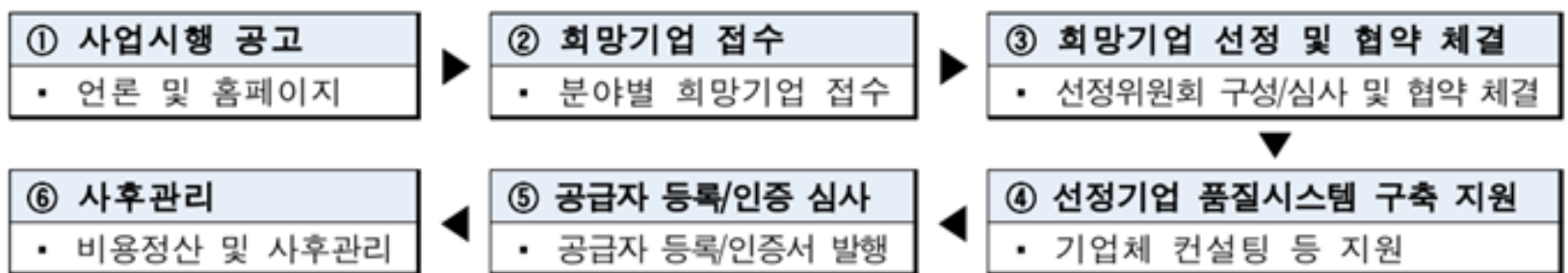
지원 분야		지원내용		지원한도
1	한수원 유자격 공급 등록 ¹⁾	순수 취득 직접비 - 교육비 등	전액 지원	기업당 연간지원 상한액 ³⁾⁴⁾ : 1억원 (ASME 포함시 1억 5천)
		컨설팅비	500만원 한도 지원	
2	KEPIC 원자력 품질인증 ²⁾	순수 취득 직접비 - 인증, 공인검사, 코드구매, 시험비용 등	전액 지원	
		컨설팅비	신규 : 1,000만원 한도 지원 갱신 : 소기업에 한해 500만원 한도 지원 (단, 2017년 이후 2회 이상 갱신시 미지급)	
3	ASME 등 해외인증 ²⁾	순수 취득 직접비 - 인증, 공인검사, 코드구매, 시험비용 등	전액 지원	
		컨설팅비	신규 : 1,000만원 한도 지원 갱신 : 소기업에 한해 500만원 한도 지원 (단, 2017년 이후 2회 이상 갱신시 미지급)	

- 1) 한수원 유자격 공급업체 등록 : 공고일 기준, A·Q등급 유자격 공급자 미등록 기업 즉, 신규 및 재등록 희망기업 지원
 - * 모든 품목을 포함하여 A 또는 Q등급 미보유시 지원가능, A등급 보유시 Q등급 지원 가능, Q등급 보유시 지원 불가
- 2) KEPIC 및 해외 품질인증 취득 : 세부 인증서 별 취득 지원 가능
 - * 해외 원자력 품질인증(17개 + 기타 주요 원전 수출국 품질인증) : IEC, API, ASHRAE, ASME, CSA, NRTL, UL, CE, EAC(TRCU), RCC-M, RTN, TUV, CQC, HAF604, SASO, UKCA, ISO 19443
 - * 해외 원자력 품질인증의 경우, 사전자체평가표에 따라 지원기업 평가점수(60점 이상)에 한해 선정평가 진행
- 3) 「지원금 지급년도」가 아닌 「협약 체결년도」 기준, 기업당 한해 총 지원금액 상한
- 4) 소요비용 지원 예외 : ① 인건비, 출장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, ② 타기관으로부터 동일 소요비용을 중복지원 받은 경우 제외, ③ 소요비용에 대한 증빙/근거 미 제출된 경우 제외

마. 행정 및 재정지원 사항

- 각 분야별 공급업체 등록 및 품질인증을 위한 행정처리 및 컨설팅 업체 리스트 공유

3. 시행 절차



4. 신청기간 : 2023. 11. 22. (수) ~ 12. 6. (수)

※ 신청방법 : 이메일 접수 (qs@kaif.or.kr)

※ 유의사항 : 사업계획서, 증빙서류 등 모든 서류가 기간 내 제출되어야 함

5. 지원자격 : 한국수력원자력(주) 협력기업 및 원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중견 또는 중소기업

※ 중견기업 지원 :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되어 유예기간을 가진 기업에 한하여 지원

6. 주요 일정

가. 2023년도 4차 지원사업 시행 공고 신청서 접수 마감 : 2023. 12. 6. (수) 17:00까지 접수 분

나. 선정평가 일정 : 2023년 12월 2주차 중 (변동 가능성 有)

다. 평가대상 기업 선정 : 2023년 12월 중 (변동 가능성 有)

라. 선정업체 품질시스템 구축을 위한 행정 및 컨설팅 지원 : 선정 이후

7. 지원기업 선정평가

가. 사전 서류평가

1) 공통 : 부채비율 500% 이상 또는 기업신용등급 'D' 이하 인 기업에 한하여 선정평가 제외

* '신용평가보고서' 내 재무평가 내용이 확인되어야 함 (필수)

2) 한수원 유자격 등록 신청기업 : 기술점검 사전 자체평가 시행(기업) 후 선정평가 여부 확인

*지원기업이 사업계획서 - 품목코드 기재하여 원산협회에 제출 시 원산협회에서 자체평가표 제공

3) 해외 원자력 품질인증 : 사전 자체평가표에 따라 지원기업 평가점수(60점 이상) 충족 기업에 한해 선정평가 진행 (붙임 7 참고)

나. 선정기준에 따른 선정위원회를 통한 평가 및 선정

1) 지원기업의 사업계획서 등을 포함한 심사는 한수원 전문가, 외부 심사위원 등 검토에 의해 이루어질 예정

2) 평가방식 : 원격시스템(Zoom 등)을 활용한 비대면 평가

3) 기업선정 : 선정평가 점수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(필요시 60점 이상 기업중 추가 선정)

평가항목	세부 항목	배점
지원기업현황	• 납품실적 • 사업수행 역량(전체인력, 해외납품실적 등) • 경영상태(매출, 수익성, 안정성) • 보유인증서 여부(국내외 인증, 특허 등)	20
성장성 및 안정성	• 성장성 • 안정성	10
지원사업의 타당성	• 지원 배경 및 필요성 • 사업 추진 내용	30
기대효과	• 활용 방안 • 기대 효과	30
종합 평가	• 생산제품, 원자력 적용 여부, 신용정보 등 기업 전체 평가	10
가점사항	• 원전주변지역 기업 (발주지법) : + 2 • 장애인기업확인서, 여성기업확인서, 경주시 위치 기업 : + 1 • 국내·외 원전기자재 관련 공급사 등록 : + 2 • KEPIC 및 해외인증 실적 : + 2 • 원전기자재 관련 주요제품의 수출 실적 : + 2 • 한수원 유자격 미등록 업체 (공고일 기준) : + 1 • 한수원 SRM 우수공급자 (당해연도) : + 2 • 부채비율 100% 미만, 유동비율 100% 이상 : + 1(+2, 모두 충족시) • 창업·벤처기업*(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, 벤처기업 유효기간내) : + 1 • 원전 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참여기업 : + 2	-

※ 평가항목에 따른 증빙서류(가점사항 포함)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 필수 (사후 제출 불가)

※ 동점자 처리 기준 : 1. 유자격 업체, 2. 신규 지원업체, 그 외 평가위원 협의결과에 따름

* 창업·벤처기업 제출자료 : 사업자등록증(창업기업), 벤처기업확인서(벤처기업)

8. 문의처

가. 중소기업 품질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: 한국원자력산업협회 과장 정구현

(Tel. 02-6257-2543 / e-mail. qs@kaif.or.kr)

나. 한수원 유자격 공급자 등록 안내 : (URL) https://khnp.co.kr/qcs_ex/supplierLogin.do

다. KEPIC 품질시스템 구축 안내

: (URL) https://www.kepic.org:444/system_cert/cert_overview/intro_A.php

9. 사후 관리 : 비용정산 및 사후관리

가. 사업완료(인증서 취득) 이후 소요비용 사후 청구 및 정산

: 결과보고서 작성 및 증빙서류 구비하여 제출 (참고 : 결과보고서, 순수취득 비용 인정범위)

나. 전문기관(한국원산)에 제출 및 주관기관(한수원) 검토 및 보완요청

다. 주관기관 → 전문기관 지원금 전달 → 지원기업에 지원금 지급 (최소 4주 소요)

※ 지급방식 : 분할지급 (50% 先 지급 후 미지급분은 지급년도 연말 혹은 이듬해 초 지급)

붙임 : 1. 중소기업 품질시스템 구축지원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1부

2. 생산제품 소개서 1부

3. 개인정보 수집·이용제공 동의서 1부

4. 자료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

5. 신청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1부

6. 사업자등록증, 중소기업 확인서 각 1부

7. 해외 원자력 품질인증 사전 자체평가표 1부

8. 유자격공급자 등록 사전 기술점검표 양식 1부 (사업계획서 제출 시 별도 송부)

9. (참고) 결과보고서 양식, 순수취득비용 집행기준 등